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31
------	------

2023.09.05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08월 14일, 남창진 의원 외 52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09.0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남창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

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.

-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의2).

나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함(안 제6조제2항제2호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됨.

나. 고향사랑기부제 개요

- 가속화되는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와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됨.

-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·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고향기부금법”)이 제정(2021.10.19.)·시행(2023.1.1.)됨.
- 이러한 “고향기부금법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,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임.
- 그리고 기부금은 지역 거주자의 복리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,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짐.

< 고향사랑기부제 세부내용 >

- ▶ (개인)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, (지방자치단체) 복리증진사업에 활용
- ▶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%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공제, 500만원 한도
- ▶ 기부금액의 30% 범위에서 3만원대 답례품(지역 내 특산품·상품권 등) 제공

- 한편,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“고향기부금법”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고향사랑

조례”)를 제정·시행(2023.1.1.)하고 있음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1) ‘고향사랑의 날’ 규정(안 제1조의2 신설)

- 동 개정안은 ‘고향사랑의 날’을 지정하고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“고향기부금법”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23.7.4. 시행)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되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 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- 참고로 안 제1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향사랑의 날을 매년 9월 4일로 지정하고 있는바, 이는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하여 기억하기 쉽고, 9월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추석과 주로 함께하는 달이며,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사(思.)의

의미가 담겨 있어 대국민 공모¹⁾를 통해 선정된 것임.

2)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추가(안 제6조 제2항제3호)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고향사랑 기부금 위탁 사무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	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<u>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</u> 의 확인	3. ----- ----- <u>초본,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</u> 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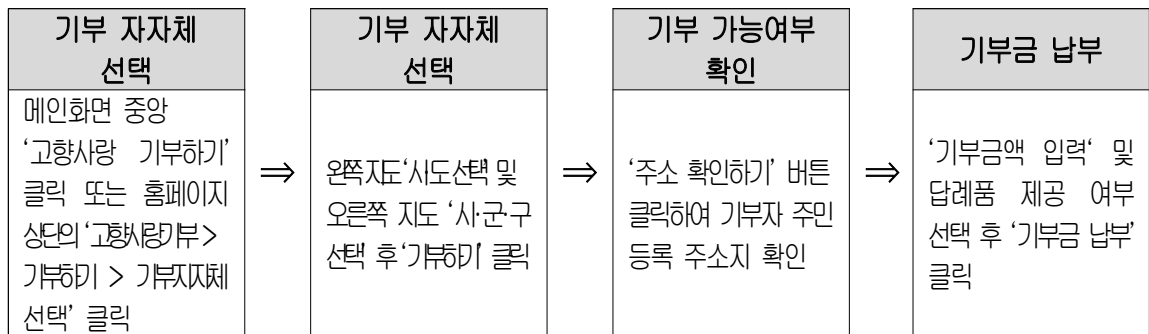
- 이는 외국국적동포²⁾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“고향기부금법”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것임.

1)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3일 개정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지정 근거 마련 후 대국민 공모(2023.2.9.~3.2.)를 거쳐 1차 국민제안과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▶7월 4일, ▶7월 7일, ▶9월 1일, ▶9월 4일, ▶10월 19일 5개 후보 일자 선정 후 3차 대국민 투표를 통해 3,996명(42.3%)이 투표한 9월 4일을 최종 선정함.

2)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

- 참고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보내거나 답례품 주문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플랫폼인 ‘고향사랑 e음’에 회원가입하고 기부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.
-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어 왔음.

<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e음 활용 온라인 기부 절차 >

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외국인동포들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
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숙자, 이종배,
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
정지웅, 최민규, 최진혁,
한 신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52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,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.
-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의2)

나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함(안 제6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9조제2항제3호”를 “법 제9조제2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서울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서울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9명이하”를 “9명 이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를 “초본, 국내거소신

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2조(답례품의 종류) ① 「<u>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고 한다)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시</u>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 2. <u>서울시</u>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 3.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	<p>제1조의2(고향사랑의 날) ① 「<u>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<u>고향사랑의 날</u>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.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은 <u>고향사랑의 날</u>이 포함된 주간에 <u>고향의 가치와 소중함</u>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제2조(답례품의 종류) ① <u>법</u> 제9조제2항제3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----- ----- 2. <u>시의</u> ----- ----- 3. ----- -----

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고 한다)이 인정하는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

2. 3. (생략)

4.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·특산품 및 공예품

5. (생략)

제4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5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① (생략)

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

시장-----

② -----

1. 시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시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9명
이하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

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

4.·5. (생략)

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초본,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